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481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2. 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,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,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전자화문서”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정보통신기술”을 “인공지능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전자문서”를 “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전자문서”를 “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전자문서”를 “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자문서”를 각각 “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”로 한다.

제31조제5항 본문 중 “전자문서”를 “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공지능기술 이용 행정작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행정작용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“전자화문서”란 <u>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.</u>
9. (생 략) 제5조(투명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제5조(투명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
제5조의2(행정업무 혁신) ① (생 략) ② 행정청은 <u>정보통신기술을</u>	제5조의2(행정업무 혁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인공지능기술 또는</u>

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·사회적·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8조(행정응원)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(行政應援)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① (생략)

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

정보통신기술-----

---. 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행정응원)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-----

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.

③ (생 략)

제17조(처분의 신청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③ ~ ⑧ (생 략)

제24조(처분의 방식)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

② · ③ (생 략)

제31조(청문의 진행) ① ~ ④ (생 략)

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들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처분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-----
-----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처분의 방식) ① -----

-----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-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청문의 진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통지하여야 하며,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<u>전자문서</u> 로 통지할 수 있다. 다만,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 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 지할 수 있다.	----- ----- <u>전자문서</u> 또 <u>는 전자화문서</u> -----. ----- ----- -----.
--	---